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04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구합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60,000원, 지방교육세 9,120,000원 합계 104,8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이 유

1. 이 사건 취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가. [redacted] [redacted]군 B 임야 2,419㎡와 C 임야 78,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2002. 4. 4.자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였다가, 그에 대하여 2014. 4. 17.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3. 16.자 매매)가 각각 마쳐지고(갑 제2호증의 1, 2),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가 제출되었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8). 농업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나. 그 상태에서 2014. 4. 30.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9일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각각 마쳐진 후(을 제2호증의 1, 2), 2014. 5. 28. 취득세 91,200,000원, 지방교육세 9,120,000원, 농어촌특별세 4,560,00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자진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을 제3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갑 제5호증, 이하 '납부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납부서에는 위 자진신고서와 같은 금액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세액과 과세표준액, 그리고 2014. 6. 16.자로 된 신고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작성명의인 표기는 없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 전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갑 제6호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 자진신고가 모두 위·변조된 서류에 기한 것으로 원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이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하여 피고는 2014. 8. 12. 취득세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갑 제7호증).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7.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29.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 등은 A, D 등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마친 것이어서 원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2014. 5. 28.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자진신고가 2014. 5. 28.자로 있었던 이상, 그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 자진신고에 대하여 같은 날자로 납부서를 교부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납부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의 납부를 위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작성·교부되는 서식이어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8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참조. 그 작성명의인이 피고라는 표기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교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2014. 5. 28.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